

4. 적용 가능한 모든 경쟁법 및 정책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종업원들의 이해를 높인다.

제10장 조세

다국적기업이 조세 부담액(tax liabilities)을 적절한 시기에 납부함으로써 진출국의 공공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기업은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조세 법규를 준수하고,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과 NCP의 역할

OECD이사회는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를 설치하고 그 역할을 강화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OECD는 NCP의 활동 기준으로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정부와 NCP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시성

- 가이드라인 참여 정부는 NCP를 설치한다.
- 정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NCP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알려야 한다.
- 정부는 세미나와 회의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정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접근성

-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일반인들이 NCP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NCP는 정당한 정보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 NCP는 적절한 시기 안에 이해당사자들이 제기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

투명성

- NCP의 활동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가이드라인 이행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결과는 공개한다.

책임성

- NCP는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NCP의 활동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이를 위해 각국 의회가 필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 OECD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에 매년 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OECD의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ommittee o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는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의견과 경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야 하며, 기업자문위원회(BIAC)와 노조자문위원회(TUAC) 및 NGO를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가이드라인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밖에 이들 자문기관의 요청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는 가이드라인을 유권해석(clarification)할 책임이 있으며, 요청 받을 경우 유권해석을 내놓아야 한다. 개별 기업이 원할 경우, 개별 기업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가이드라인 관련 사항에 대해 개별 기업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개별 기업의 행동에 대한 판정을 내리진 않는다.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는 가이드라인 관련 사안에 대해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위해 위원회는 연락사무소의 보고, 자문기관의 의견, NGO 및 비가입국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4)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과 한국의 상황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한국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국 NCP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NCP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든 실무사항은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에서 맡고 있다.²⁾

가이드라인 참가국의 NCP 구성은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를 가진 NCP는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영국, 스위스, 스페인,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 그리스, 독일 등의 NCP는 정부 부처만 참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NCP가 단일 정부부처로 구성된 나라는 21개국, 복수의 정부부처로 구성된 나라는 7개국, 노사정 3자(에다가 복수의 정부부처)로 구성된 나라는 9개국, 4자 구조로 구성된 나라는 2개국이다.

정부 부처만 참여하는 구조를 가진 경우에도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노동

2)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산업자원부 차관
- 위 원 :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관련 1급 공무원, 16개 시도 행정부지사부시장
- 간 사 :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장

조합과 사용자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비공식적으로 보장하는 사례와 미국처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는 사례로 나뉜다.

한국은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정부 부처가 독점하는 연락사무소 구조를 갖고 있다.

앞에서 OECD가 제시한 NCP의 활동기준 네 가지를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한국 NCP의 가시성, 접근성, 투명성, 책임성 모두에서 불합격점을 받고 있다.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2001년 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가이드라인 참여국 NCP에 제기된 67건의 사건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국 NCP와 관련된 사건은 모두 3개였다.

과테말라에 진출한 한국기업 최신이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한 사례(2002년 2월~2003년 7월까지 진행), 스위스에 본사를 둔 한국네슬레가 공장폐쇄로 노조를 위협한 사례(2003년 9월~2004년 3월까지 진행),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한국수출자유지역공사가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한 사례(2004년 3월~7월까지 진행)와 관련하여 국제노동조합들이 한국 NCP에 제소한 것이다.

이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TUAC 보고서는 한국 NCP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과테말라 진출기업인 최신 사례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한국 NCP가 사건 해결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가이드라인 처리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제소 당사자인 국제섬유노련(ITGLWF)에 직접 답변을 주지 않았고, ITGLWF 한국 가맹조직을 접촉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결국 과테말라 국내법을 통해 해결되었으며, 한국 NCP는 건설적인 역할을 통해 조기에 해결할 기회를 놓쳤다”고 썼다.

한국네슬레 사례에 대해 보고서는 “스위스 NCP가 문제 해결에 건설적

인 역할을 했다. 한국 NCP가 문제 해결에 주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NCP가 관련 노조와 회사를 수차례에 걸쳐 만났으며, 한국에서 온 스위스 원정단도 만났다. 스위스 NCP는 한국 NCP에 관련 당사자들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동성명서의 가능성을 점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방글라데시 진출 한국수출자유지역공사 사례와 관련하여 TUAC 보고서는 “관련사의 임무가 방글라데시 수출자유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제기된 사안과 관련성을 갖고 있음이 확실하지 않다고 한국 NCP가 답변을 보내왔다”면서 “한국 NCP가 한국 회사는 노동조합권을 방해하지 않았고, 단지 수출자유지역만 개발했을 따름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썼다.

이상에서 언급한 보고서 내용은 한국 NCP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락사무소의 위상에 대한 인식도 크게 부족함을 보여준다.

2006년 6월 TUAC은 최악의 활동을 펼친 사례로 미국과 일본의 NCP와 더불어 한국 NCP를 지목한 바 있다.

한국 연락사무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완전히 배제되고 관료들로만 구성된 한국 NCP의 불균형한 구성이 자리 잡고 있다.

산자부의 실무부서가 가이드라인과 NCP 활동을 외국인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뿐 원래 취지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진과 노동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할 역량과 의지가 없다는 점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한국의 노동조합들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며, 결과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내 노동조합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사례가 2003년 민주노총 화섬연맹을

통한 한국네슬레의 사례에 그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한다는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의 연락사무소(NCP)인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stakeholders)를 폭넓게 참여시켜 그 구성을 다양화하고, 노동·사회·환경 분야의 국제기준에 관한 실무진의 지식과 경험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UN글로벌콤팩트

(1) UN글로벌콤팩트 개요

UN글로벌콤팩트는 기업들이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정책을 실행할 것을 장려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으로 1999년 1월 31일 세계경제포럼에서 코피 아난 UN사무총장이 처음으로 제안했다.

당시 코피 아난 총장은 재계지도자들에게 UN 기관들과 노동시민사회와 더불어 글로벌콤팩트라는 새로운 국제캠페인에 참가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듬해인 2000년 7월 26일 유엔본부에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UN글로벌콤팩트는 세계화라는 도전 속에서 국제사회의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 책임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기업 활동을 증진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행위자들과의 협력 속에서 민간부문, 즉 기업들이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지구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

UN글로벌콤팩트는 국제조약이나 협정 같은 규제 도구(regulatory framework)가 아닌 일종의 신사협정의 성격을 띠며, 공적인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계몽된 자기이익(enlightened self-interest)이라는 관점 속에서 기업 및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유엔은 유엔고등인권판무관실,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마약범죄국(UNODC) 간에 기구 간 협력팀(Inter-Agency Team)을 만들어 글로벌콤팩트를 지원하고 있다.

자발적인 네트워크라는 성격을 띤 UN글로벌콤팩트의 가장 중요한 참가 단위는 기업이다. 2000년 7월 26일 본격적인 사업 시작 이래 지금까지 90개 나라 2,500여개의 기업들이 글로벌콤팩트에 참가하고 있다. 각국의 기업협회 등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NGO, 학계 등 이해당사자를 합하면 참가 단위는 3,000여개에 달한다.³⁾

UN글로벌콤팩트는 자발적인 국제기준인 만큼 그 이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규제 수단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참여 기업이나 단체들은 자신들의 사업보고서나 활동보고서에 UN글로벌콤팩트의 10가지 원칙과 관련한 활동 내용과 이행 여부를 설명하고, 그 내용은 UN글로벌콤팩트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나 단체는 "무(無)보고(non-communicating) 대상으로 간주되며, 2년 동안 관련 보고를 사무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無)활동"(inactive) 기업 혹은 단체로 처리된다.

(2) UN글로벌콤팩트의 내용

UN글로벌콤팩트의 10가지 원칙은 인권·노동·환경·반부패 영역에 걸쳐

3) 국제 수준의 사용자단체로는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사용자기구(IOE), 국제화학산업협회(ICCA)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 수준의 사용자단체로는 덴마크경제인연합, 이탈리아은행협회, 인도경영자협회, 태국경제인연합, 아르헨티나경제인연합 등 15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제 수준의 노동조합으로는 국제자유노련(ICFTU),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련(ICEM), 국제금융노련(IMF)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 수준의 노동조합으로는 남아프리카노총(COSATU) 등 2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있고, 보편적인 합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다음의 기준들에서 연유한다.

- 세계인권선언⁴⁾
- 작업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⁵⁾
-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⁶⁾

4)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1948년 12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 전야의 인권 무시, 인권 존중과 평화 확보 사이의 깊은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적 인권 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택되었다. 전문(前文)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다. 제21조까지는 시민적·정치적 성격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성격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노동권과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자의 단결권(23조) 등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5) 「작업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은 앞에서 살펴본 ILO핵심기준을 뜻한다.

6)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은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선언문이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의 인간환경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리우회의 마지막 날에 채택되었다. 당초에는 현장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선언으로 조정되었다. 리우선언의 전문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스톡홀름 선언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와 사회의 주요 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사회의 주요 분야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창조함으로써 새롭고 공평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고, 지구의 환경 및 개발 체제의 통합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정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들의 고향인 지구의 통합적·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로 시작하여 총 27개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원칙의 내용은,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심의 중심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하며(원칙1),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국가적 제도로 실시되어야 하고(원칙17), 여성은 환경관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원칙20), 국가는 환경분쟁을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평화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원칙26), 각 국가와 국민은 이 선언에 표명된 원칙의 실천을 향하여 성실히 또한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원칙27)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우선언은 하나의 선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지구 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나 협약의 기본 지침이 되고 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 UN반부패협약⁷⁾

글로벌콤팩트는 기업들에게 인권·노동기준·환경·반부패의 영역에서 핵심 가치를 포용하고 지지하며, 이를 법률로 제정하도록 요청한다.

인권

-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 원칙2. 기업은 인권 확대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

노동기준

- 원칙3. 기업은 실질적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한다.
- 원칙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철폐한다.
- 원칙5. 기업은 아동 노동을 실질적으로 철폐한다.
- 원칙6. 기업은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 원칙7. 기업은 예방 차원에서의 환경 문제 접근법을 지지한다.
- 원칙8. 기업은 보다 큰 환경적 책임을 장려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 원칙9. 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7) 「국제연합반부패협약」(UN Conventions against Corruption)은 1996년 12월 국제 연합총회에서 반부패에 대해 결의한 뒤, 이듬해 미주기구(OAS)의 반부패협약과 1999년 2월 발효된 부패라운드(OECD 해외뇌물방지협약)에 이어 발효된 국제적인 반부패 협약이다. 2003년 10월 31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같은 해 12월 멕시코 메리다에서 서명 절차를 거친 뒤, 30번째로 에콰도르의 비준서가 기탁된 2005년 9월 15일부터 90일이 되는 2005년 12월 14일에 정식 발효되었다. 199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협약으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해치고, 인권 유린과 시장을 왜곡하며, 조직범죄와 테러 등 치안에 대한 위협을 가져오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부패로 인해 고통 받는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부패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 정부가 이를 위해 반부패기구를 창설하거나 선거·정당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공공·민간 분야에 걸쳐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광범위한 부패 행위에 대한 각국 정부의 범죄 규정, 뇌물·횡령·돈세탁 등을 불법화하는 법률 채택, 부패 지원이나 이와 관련된 수사 방해 행위의 범죄 명시, 정치 지도자가 수탈한 국가 자산의 차기 정부 환수 규정 명문화 등이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반부패

원칙10. 기업은 금품강요 및 뇌물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3) UN글로벌콤팩트와 한국의 상황

세계적으로 3,000여개에 달하는 UN글로벌콤팩트 참가 단체 가운데 한국 단체는 모두 14개로, 그 중 12개가 기업이고 2개는 NGO다.⁸⁾

한국에서 참여하는 기업들은 공기업이 대부분이고, 삼성, 현대, SK, LG 같은 대기업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UN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추세와 비교할 때 한국 대기업의 불참은 대조적이다.

대기업들이 노동권이나 사회권 보장에 소극적인 미국의 경우에도 MS, 듀폰, HP, 나이키, 코카콜라 등이 UN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아사히맥주, 후지제록스, 일본항공(JAL), 미츠비시중공업, 닛산자동차, 올림푸스, NEC, 시세이도, 도시바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경제규모를 가진 OECD 회원국 가운데 단 1개의 대기업도 UN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에서도 대기업을 UN글로벌콤팩트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기는 했다. 2005년 2월 21일 전경련과 UNDP(국제연합개발계획)는 UN글로벌콤팩트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8) 한국 참가단체는 다음과 같다. 팔호 안은 참여 날짜다.
 - 기업: 한국전력(2005.8.11), 한국도로공사(2006.11.8), 한국토지공사(2005.10.5), 한국중부전력(2006.6.30), 한국동남전력(2006.2.21), 한국서부전력(2005.5.4), 한국동서전력(2006.8.11), 에코프론티어(2005.10.21), 대우증권(2006.6.13), 대구은행(2006.7.18), 웅진코웨이(2006.6.22), 우리은행(2006.3.20), 한국반부패투명
 - 기타: 한국반부패투명성협약위원회(2006.9.14), 한국투명성기구(2006.9.8).

그리고 같은 해 3월 10일 전경련도 참가한 가운데 체결된 투명사회협약에는 제21조에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영역에 대한 10대 원칙에 근거한 UN글로벌콤팩트에 적극 참가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후 한국 대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의 글로벌콤팩트 참여는 유야무야되었다. 그 이유는 <한겨레> 2006년 5월 7일자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글로벌콤팩트 가입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글로벌콤팩트의) 원칙이 국내 1위 재벌그룹인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상충되는 탓이다."

UN글로벌콤팩트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심과 이해 역시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콤팩트의 주된 참가단위가 기업이고, 그것이 자발적 기준일 뿐 그 이행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참여할 별다른 장치가 없는 점이 주된 이유다.

4) 국제산별협약

(1) 국제산별협약 개요

국제산별협약(International Framework Agreement)은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산별노조들이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발전시켜온 사회적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이다. 국제산별협약은 기업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확산에 대한 국제노동조합의 대응이라는 성격도 띤다.

90년대 들어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기업행동강령을 채택하였고, 이런 이유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높이고 제도적 참여를 보장받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제산별노조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국제산별협약을 바라본다. 다국적기업의 활동에서 사회적 대화를 증진하고 노사관계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협약의 체결과 이행 그리고 점검의 주체를 다국적기업과 국제노동조합으로 설정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노사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국제산별협약은 의미가 있다.

국제산별협약은 1988년 프랑스의 식품업체인 Danone과 국제식품노련(IUF)이 처음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 40여개가 체결되었다.

아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산별협약이 본격화된 것은 1995년 이후로 국제금융노련(IMF)과 남아프리카의 광산회사인 AngloGold 사이에 체결된 협약을 뺀다면 유럽의 다국적기업들과 체결된 것이 전부다.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축인 북미나 아시아의 다국적기업들은 국제산별협약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금융노련(IMF)은 유럽 기업들과의 국제산별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유럽 차원의 종업원평의회(European works councils: EWC) 제도를 꼽는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EWC가 강한 기업에서 국제산별협약이 체결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제산별노조와의 공조 속에 유럽 각국의 산별노조가 개별 기업의 종업원평의회(works councils)와 협력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진에게 국제산별협약의 체결을 요청하고 이를 경영진이 받아들여 협약을 체결하는 패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독일금속노조(IG Metall)가 대표적인데, 2010년까지 독일의 금속산업 기업 가운데 25개를 선정해 국제산별협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표3] 다국적기업의 국제산별협약 체결 현황 (2006년 9월 현재)

회사	종업원수	국가	부문	국제산별노련	체결연도
----	------	----	----	--------	------

Danone	100,000	프랑스	식품가공	IUF	1988
Accor	147,000	프랑스	호텔	IUF	1995
IKEA	70,000	스웨덴	가구	IFBWW	1998
Statoil	16,000	노르웨이	석유	ICEM	1998
Faber-Castell	6,000	독일	사무실 자재	IFBWW	1999
Freudenberg	27,500	독일	화학	ICEM	2000
Hochtief	37,000	독일	건설	IFBWW	2000
Carrefour	383,000	프랑스	소매업	UNI	2001
Chiquita	26,000	미국	농업	IUF	2001
OTE Telecom	18,500	그리스	통신	UNI	2001
Skanska	79,000	스웨덴	건설	IFBWW	2001
Telefonica	161,500	스페인	통신	UNI	2001
Merloni	20,000	이태리	금속	IMF	2002
Endesa	13,600	스페인	전력	ICEM	2002
Ballast Nedam	7,800	네덜란드	건설	IFBWW	2002
Fonterra	20,000	뉴질랜드	낙농	IUF	2002
Volkswagen	325,000	독일	자동차	IMF	2002
Norske Skog	11,000	노르웨이	제지	ICEM	2002
AngloGlod	64,900	남아프리카	광산	ICEM	2002
DaimlerChrysler	372,500	독일	자동차	IMF	2002
Eni	70,000	이태리	에너지	ICEM	2002
Leoni	18,000	독일	전기/ 자동차	IMF	2003
ISS	280,000	덴마크	청소/ 관리	UNI	2003
GEA	14,000	독일	엔지니어링	IMF	2003
SKF	39,000	스웨덴	볼베어링	IMF	2003
Rheinmetall	25,950	독일	군수/ 자동차	IMF	2003
H&M	40,000	스웨덴	소매업	UI	2004

Bosch	225,900	독일	자동차/ 전기	IMF	2004
Prym	4,000	독일	제철	IMF	2004
SCA	46,000	스웨덴	제지	ICEM	2004
Lukoil	150,000	러시아	에너지/ 석유	ICEM	2004
Renault	130,700	프랑스	자동차	IMF	2004
Impregilo	13,000	이태리	건설	IFBWW	2004
EDF	167,000	프랑스	전력	ICEM/PSI	2004
Rhodia	20,000	프랑스	화학	ICEM	2005
Veidekke	5,000	노르웨이	건설	IFBWW	2005
BMW	106,000	독일	자동차	IMF	2005
EADS	111,000	네덜란드	우주항공	IMF	2005
Röchling	8,000	독일	자동차	IMF	2005
Lafarge	77,000	프랑스	건축자재	ICEM/IFBW W	2005
Arcelor	330,000	룩셈부르크	제철	IMF	2005
PAS Peugeot Citroën		프랑스	자동차	IMF	2006

* 출처: FES. 2005. 『Workers' Tool or PR Ploy?』와 IMF 웹사이트
재정리.

국제산별협약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노간, 노사간에 회의를
조직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활동들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제산별노조들은 국제산별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점검할만한 능력과 자원이 부족하며, 이 때문에 해
당기업과 연관을 맺고 있는 하청업체나 납품업체에까지 국제산별협약을
적용시키려는 노력은 원칙으로는 강조되고 있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
는 측면도 있다.

(2) 국제산별협약의 내용

국제산별협약은 (국가 수준이나 산업·기업 수준의 단체협약처럼) 세세한 내용을 지닌 단체협약은 아니며, 사회적 대화와 노사관계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최저기준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의 노사가 따라야 할 방향과 원칙을 설정해 놓은 것이다.

국제산별협약의 내용을 이루는 주된 요소는 다음 3가지다.

- ILO핵심노동기준의 주요 내용을 담을 것
- 본사 및 원청업체는 물론 납품업체와 하청업체에도 적용할 것
- 협약의 이행 및 점검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할 것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3가지 요소 가운데 두 번째 요소, 즉 납품업체와 하청업체에도 국제산별협약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협약에 서명한 다국적기업이 직접 노동권 침해를 자행하기 보다는 해당 기업과 관련된 납품업체나 하청업체가 노동권을 유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납품업체와 하청업체에 국제산별협약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제산별협약은 “ILO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를 사업 파트너로 선정하지 않는다” 수준의 내용만 담고 있어 그 이행의 책임성과 강제성이 부족하며, 현실적으로도 하도급 관계의 복잡성과 고용관계의 다양함으로 인해 다국적기업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하도급관계를 통한 간접고용은 비정규직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법제도와 관행이 크게 달라 국제노동조합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폭이 현실적으로 그리 넓지 못하다.

다음에 소개할 국제산별협약은 2005년 9월 12일 프랑스의 세계적 건축재 회사인 라파즈(Lafarge)와 국제건설노련(IFBWW)-국제화학에너지광

산노련(ICEM)-세계목공노련(WFBW) 간에 체결된 것으로 공식 명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 노사관계에 관한 협약’이다.⁹⁾

이 협약은 국제산별협약 가운데 최근에 체결된 관계로 가장 완성된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어 (서명을 제외한) 전문을 소개한다.

서문

라파즈는 사회 진보와 경제 발전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믿는다. 라파즈와 종업원의 이익과 성공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 라파즈는 열린 대화를 통해 그룹의 미래에 종업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종업원들은 스스로를 대변하기 위해 종업원 대표를 선출하거나 노동조합 조직을 선택할 수 있음을 라파즈는 인정한다.

라파즈의 철학은 라파즈의 행동강령(the Lafarge Principle of Action)에 따라 종업원과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라파즈는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가치를 결합시킬 책임이 있듯이, 각국의 법률과 기준 그리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따를 책임이 있다. 공동의 이익, 개방성, 대화, 통합과 헌신에 대한 존중은 그룹과 종업원의 주요한 윤리 원칙”이라고 행동강령은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들은 팬츠는 임금과 노동조건, 전망 있는 일자리,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그리고 단체교섭권이 좋은 노사관계의 전제 조건이라고 믿는다.

9) IFBWW(국제건설목공노동자연맹)은 건설, 건설자재, 목재, 임업 및 관련 산업에서 일하는 전 세계 125개국 281개 노조에 소속된 1천5십만 명의 조합원을 조직하고 있는 국제산별노련이다. ICEM(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동조합연맹)은 화학, 에너지, 광산 및 시멘트, 유리, 요업을 포함한 관련 산업에서 일하는 전 세계 121개국 425개 노조에 소속된 2천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국제산별노련이다. WFBW(세계건설목공노동조합연맹)은 건설, 목재 산업에서 일하는 150만 노동자를 대변하며, 전 세계 41개국 55개 노조를 두고 있다.

라파즈(Lafarge)는 건설자재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며, 시멘트, 골재, 콘크리트, 지붕재료, 석고 등 네 가지 사업 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라파즈는 75개국에서 7만7천 명이 일하고 있다.

협약 서명 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인권과 사회권을 존중하고 노동조건, 노사관계,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기준, 환경적 실천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바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협약 서명 당사자들은 계열사 원칙이 그룹 안의 핵심적인 성과 관리 과정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노사관계 문제는 현장에 최대한 밀착해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는 원칙을 존중한다.

라파즈는 노동자 권리의 존중이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라파즈는 아래에 제시된 원칙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사업 파트너, 하청회사, 부품공급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 노력할 것이다.

기본 원칙

라파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원칙과 작업장 권리 선언, ILO의 다국적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 선언, 국제연합(UN)의 세계협약(Global Compac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강제노동 철폐

노예노동과 비자발적인 감옥 노동을 비롯한 강제노동의 직간접적인 사용을 금지한다(ILO협약 29호 및 105호).

고용차별 금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출신 혹은 기타 구별되는 특징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는 작업장이 어디든 간에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노동자는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아야 한다(ILO 협약 100호 및 111호). 당해 기업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는 최소한 그 나라의 노동자와 동일한 권리와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아동노동 사용 금지

아동노동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사용을 금한다. 단, 15세가 넘거나 의무적으로 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나이보다 많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할 수 있다(ILO 협약 138호). 연령의 측면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은 작업의 성격과 특징상 해당 아동의 건강과 안전 혹은 품성에 해를 미칠 수 있는 경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

라파즈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을 인정하며, 그 권리를 지지한다(ILO 협약 87호 98호).

라파즈 그룹은 노동자 대표를 차별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ILO 협약 135호).

생활임금

노동자는 해당 국가의 현행 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산업/부문에 적용되는 기준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임금 조건에 관해 자기 말로 된 구두 정보와 서면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해당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한 임금에 대한 공제가 이뤄질 수 없다. 초과노동은 과도하게 이뤄져서는 안 되며 할증률에 따라 보상받아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1주에 최소 1일의 휴식기간을 주어야 한다.

보건, 안전 및 노동조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제공해야 한다(ILO협약 155호). 최상의 산업안전보건 관행을 따라야 하며, ILO의 산업보건관리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산업재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가져야 한다.

협약 서명 당사자들은 HIV에이즈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ILO의 HIV/에이즈 실천강령에 부합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

직업 훈련

모든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숙련 수준을 높이는 훈련과 관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가능하다면 언제나, 라파즈 그룹은 노동자의 숙련 수준을 향상시키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력개발에 참여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노동자 훈련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행과 사후 점검

라파즈 그룹은 본 협약에 관한 정보를 서면 및 구두의 형태로 본 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나라에 제공할 것이다.

모든 협약 서명 당사자들은 라파즈가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 본 협약의 내용을 가능한 널리 알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라파즈 경영진과 협약에 서명한 국제산별연맹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reference group)는 최소 1년에 1회 혹은 필요하다면 언제나 본 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합을 가져야 한다. 라파즈 그룹은 평가위원회의 임무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현행 협약에 대한 연례 평가는 모든 협약 서명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라파즈 그룹의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모든 협약 서명 당사자들은 관련 당사자들을 위한 권고를 만들기 위해 본 협약의 해석 혹은 이행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입장의 차이를 함께 점검하는 데 동의한다.

유효기간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은 효력을 갖는다. 본 협약은 서명한 때로부터 4년 이내에 협약 서명 당사자 한쪽이 요구하면 수정될 수 있다.

(3) 국제산별협약과 한국의 상황

국제산별협약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도는 한국의 노사 모두 크게 부족하다. 그 이유는 한국의 노사협상과 단체교섭이 아직 기업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노사관계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국제 활동 관련 경험과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제산별협약이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국제노동조합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도 한국의 노동조합이 국제산별협약에 생소한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Lafarge나 Norske Skog처럼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가운데 국제산별협약을 체결한 기업들도 있으나, 제대로 홍보 교육되지 않음으로써 일반 노동자는 물론 노조간부나 회사관리자들도 국제산별협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으로는 현대, 삼성, SK, LG 등 해외에 진출해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 국적의 다국적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과 국제산별협약은 전혀 관계가 없는 실정이다.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시점에서 현대자동차처럼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강한 기업들의 경우 국제산별노조와 협력하여 국제산별협약 체결을 시도해볼직 하다.

5) Responsible Care

(1) Responsible Care 개요

우리말로 '책임 있는 관리' 쪽으로 번역되는 Responsible Care, 즉 RC는 국제화학산업협회(ICCA)가 회원조직인 각국의 화학산업협회를 통해 화학기업들과 더불어 전개하고 있는 화학제품의 생산·처리와 관련하여 작업장과 지역사회의 보건·안전·환경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인 국제캠페인

페인이다. ICCA는 RC를 UN글로벌콤팩트의 환경 원칙에 부합토록 한다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데, 2004년 11월 현재 모두 51개국이 RC에 참여하고 있다.

ICCA는 회원조직 및 관련기업들이 RC의 실천과 점검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전체 사회와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RC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RC의 목표인 보건·안전·환경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지역·국가·국제 차원에서의 이해당사자(해당 종업원, 지역주민, 지방정부, 중앙정부, 국제기구)와 대화하고 협력할 것을 장려한다.

RC 개념이 대두하게 된 데는 1984년 12월 발생한 인도의 보팔 참사가 큰 역할을 했다. 보팔 참사는 미국 화학업체인 유니언카바이드 사의 비료 공장에서 다량의 메틸이소시아염(MIC)이 누출되면서 사망자 2천 명, 영구장애자 5만 명, 부상자 60만 명을 초래한 사상 최악의 산업재해다.

보팔 참사를 계기로 화학제품의 제조·운반·처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으며, 1985년 캐나다 화학업체 사용자들이 처음으로 화학제품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Responsible Care)의 필요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ICCA는 RC를 정식 사업으로 채택했으며,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정상회담에서 「Agenda 21」을 채택했다.

ICCA의 조정 하에 각국의 화학업계를 대변하는 화학공업협회가 자국에서의 RC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으며, ICCA는 RC가 단순한 원칙과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그 정신과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ICCA는 체크리스트 마련, 성과지표 및 검증절차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운영체계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업장과 지역사회의 보건·안전·환경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RC를 화학산업에 관련된 여타 산업으로도 점차 확산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 Responsible Care의 주요 내용과 노동조합의 참여

ICCA가 매년 발행하는 『Responsible Care Status Report』를 토대로 RC에서 강조되는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RC 지도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
- RC 명칭과 로고의 사용
- 지역사회 홍보
-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보건 및 안전 상태
- 처리과정 안전기준
- 환경보호 및 폐기물 감소
- 안전한 보관과 유통
- 생산물에 대한 책임
- 기업 안팎의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 여부
- RC 활동 결과의 공표 및 점검
- 홍보물 발행
- 각국 화학공업협회와의 협력관계
- 자체 내부 평가
- 증명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의 의사소통

유럽화학공업협회(CEFIC)는 유럽 차원의 보고서로 『Responsible Care Status Report: Europe』를 내고 있다. 보고서에는 보건·안전·환경 사업성과의 평가, 산업재해 사망자수, 산업재해 발생건수, 직업병, 대기 및 수질 오염, 국가별 보고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CEFIC는 RC 사업의 일환으로 『직업병 발생률 보고서』도 내고 있는데, 직업병 발생률은 RC의 핵심적인 실행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병이란 “비정상적 상태 혹은 질환”을 뜻하며, 사고에서 직접 연유한 것이라기보다는 업무관련 요인 때문에 일어난 것도 포함한다.

CEFIC는 유럽화학산업사용자그룹(ECEG), 유럽광산화학에너지노조연맹(EMCEF)과 더불어 2003년 5월 'RC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기별 모임을 갖는 공동평가단을 구성한다.
- 유럽 화학산업에서의 보건·안전·환경 개선 활동을 평가한다.
- RC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 보건·안전·환경을 주제로 종업원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화학산업에서의 사고 및 재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 국가별로 모범사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종업원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 보건·안전·환경 방향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파트너들의 역할을 지원한다.

프랑스화학공업협회(UIC)는 1990년 RC를 채택한 이래 직업병,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 에너지 소비, 환경보호 투자에 관한 지표를 개발해 관리해오고 있다. 특히 2002년 5월 20일 RC사업의 연장으로서 관련 노동조합 4개와 '작업장에서의 보건·안전 개선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독일화학공업협회(VCI)는 1991년 RC를 채택한 이래 기후보호, 환경보호, 생산자 책임성, 산업안전보건, 처리과정 안정성 등에 관한 측정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종업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회원기업들에서 종업원평의회(works councils)를 통한 정보공유 모임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노조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독일화학산업사용자연맹(BAVC) 및 독일화학에너지광산노조(IGBCE)가 공동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VIC, BAVC, IGBCE 사시에 'Responsible Care 사회파트너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으며, 화학산업사용자책임보험협회(BG Chemie)의 지원을 받아 3자가 함께 여는 RC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일본화학공업협회(JCIA)는 1995년 일본 Responsible Care 협회(JRCC)

를 설립하고, 산업폐기물 처리, 환경보전, 지구온난화 방지, 유해대기오염 물질 소멸, 환경투자, 보안방재, 노동안전위생, 화학제품 안전, 물류 안전 등의 영역에서 노동조합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오고 있다. JRCC는 JCIA와 일본화학에너지산업노동조합연합회(JEC-Rengo)와 작업장에서의 보건·안전 개선과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1997년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은 RC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사업에 착수해 화학산업 노동자들 대부분이 RC에 관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ICEM은 RC의 대중화와 국제적 확산을 위한 노력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마침내 1999년 국제화학공업협회(ICC)와 RC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공식 대화 창구를 열기로 결정했다.

당시 ILO 역시 ICEM과 ICCA 사이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작업장 보건·안전과 환경 보호 문제에 노동자 혹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ICEM과 ICCA 사이의 합의는 RC의 실행과 평가 과정에서의 노동자 참여와 노동조합 개입을 우려한 미국화학공업협회(ACC)의 강력한 반발로 2001년 4월 끝내 무산되었다.

(3) 한국에서의 Responsible Care 현황

한국에는 1999년 12월 6일 석유화학, 정밀화학, 비료업계, 소다업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를 비롯하여 화학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국 Responsible Care 협의회(KRCC)가 설립되어 있다.

한국RC협의회는 2000년 9월 20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RCLG (Responsible Care Leadership Group)회의에서 정식가입이 승인되었으

며, 2006년 현재 69개 회사와 8개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RC협의회는 2003년 8월 아시아태평양지역RC총회(APRCC)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이 때 APRCC 개최 지원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RC기구(APRO)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국을 대상으로 조직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화학산업을 포괄하는 전국 수준의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산하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과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화섬연맹) 2개가 있다. 하지만, 이들 화학산업 노동조합은 RC에 대한 정책과 입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RC와 관련하여 기업 안팎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화학산업 노동조합과 한국RC협의회 사이에 실질적인 협력 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의 영향으로 기업 수준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문제와 관련하여 노사 간에 여러 가지 공동사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산업이나 전국 수준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사간 협의나 공동사업은 전무하다.

그 배경에는 노동조합의 참여를 꺼리는 경영진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RC에 관한 노동조합의 정책역량과 참여의지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RC협의회 역시 다른 나라의 RC협의회에 비해서는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 특히, 보건·환경·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의 참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들 역시 기업별 노사관계에 치우쳐 화학산업 수준에 걸맞은 보건·환경·안전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화학산업 차원의 노사관계가 부재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화학산업 사용

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며, 산별 수준 노동조합의 정책역량이 부족한 현실이 RC를 한국에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3. 결론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활용할만한 국제기준 5가지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기준은 적용대상, 참여주체, 구속력, 내용에서 차이를 갖고 있다.

[표4] 다국적기업 관련 국제기준의 특성 비교

범주	ILO 기본협약	OECD 가이드라인	UN 글로벌 콤팩트	국제산별협약	RC
적용대상	회원국	회원국 및 참여국	참여기업	참여노사	참여기업
주체	노사정	노사정	기업(사)	노사	기업(사)
구속력	국제협약 법률적 성격	자발적 기준 행정적 절차	자발적 기준	단체협약 자발적 기준	자발적 기준

우선 적용대상에서 ILO기본협약과 UN글로벌콤팩트는 ILO회원국과 UN회원국 모두에 적용되며, OECD가이드라인은 OECD 회원국과 가이드라인을 승인한 일부 국가에만 적용된다. 반면, 국제산별협약과 RC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특정 기업의 노사가 주체가 된다.

ILO기본협약과 OECD가이드라인은 노사정 3자를 참여주체로 하는데 반해, UN글로벌콤팩트와 RC의 주된 참여주체는 (노동조합이나 지역사회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촉구하기는 하지만) 기업을 중심으로 한다. 한편, 국제산별협약은 단체협약의 성격을 띠는 만큼 국제·국가 수준의 노사를 참여주체로 한다.

가장 큰 구속력을 갖는 것은 국제협약인 ILO기본협약이다. 많은 나라에서 ILO기본협약이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나 ILO회원국이라면 기본협약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OECD가이드라인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성격의 협약이기는 하나 OECD라는 국제기관이 제정하고 관련국에 NCP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해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큰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UN글로벌콤팩트나 RC는 참여주체의 신뢰와 자발적인 노력(initiative)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구속력은 떨어진다. 그리고 국제산별협약의 경우 국제 수준에서 국제산별노조와 다국적기업 본사 간에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단체협약으로서의 상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 5가지 국제기준을 살펴보면, RC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기준이 모두 ILO핵심노동기준을 기본 뼈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인권보호, 정보공개, 작업장에서의 보건안전 따위가 주요한 공통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은 인권과 노동권에서 과학기술까지 가장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반면, ILO기본협약은 기본(fundamental)이라는 말에서 잘 드러나듯이 구체적인 내용 4가지(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폐지, 아동노동 철폐, 차별금지)에 집중하고 있다.

[표5] 항목별 국제기준 비교

항목	ILO 기본협약	OECD 가이드라인	UN 글로벌콤팩트	국제산별 협약	RC
인권보호		○	○	○	
결사의 자유와	○	○	○	○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폐지	○	○	○	○	
아동노동 철폐	○	○	○	○	
차별금지	○	○	○	○	
정보공개		○		○	○
작업장 보건·안전		○		○	○
직업훈련		○		○	
환경보호		○			○
조세정의·법규준수		○			
과학기술		○			○
소비자보호·반독점		○			
반부패·뇌물금지		○	○		

위의 표는 다국적기업을 다루는 국제기준들의 공통분모가 (1) 인권보호, (2)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3) 강제노동 폐지, (4) 아동노동 철폐, (5) 차별금지, (6) 기업정보의 공개, (7) 작업장 보건안전으로 이뤄짐을 보여준다.

이 7가지 항목은 다국적기업들의 영업활동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나 기업이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국제기준들을 실천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적절한 정치적 환경과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노동을 배제한 권위주의 정책에 익숙한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사회경제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CSR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은 분명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결국 정부와 기업을 나서게 하는 주요 동력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다국적기업 관련 국제기준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게 다음의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업 차원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활동을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 이 점에서 산별노조를 건설하려는 한국 노동조합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국적기업을 규율하는 국제기준들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게 높은 수준의 정책역량과 조직 동원력이 필요하다. 산별노조를 통한 인력과 자원의 집중은 기업별로 분산된 노동조합의 힘을 전국 수준 혹은 국제 수준에서 결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동조합의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산별노조 건설과 맞물려 있지만 산별노조가 저절로 노조의 정책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운동을 굴러가는 두 바퀴가 '투쟁'과 '교섭'이라 할 때 지금까지 한국 노동조합은 '투쟁'에 매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투쟁만능주의로는 정책역량이 강화될 수 없고, 이는 노조 역량의 약화라는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략 수립이 시급한 대목이다.

셋째, 노동조합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는 제도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우리가 살펴본 국제기준들 역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은 물론 국가나 국제 수준에서 사회적 대화를 증진하는 데 유효한 틀로 기능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넷째, 인권과 사회권 그리고 환경권을 둘러싼 활동과 사업에서 노동조합은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교류와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이는 이행과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확보한다는 국제기준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

우리가 살펴본 국제기준들은 다국적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고 노동조합에게는 '사회적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준다.

물론 이 국제기준들이 완벽하거나 자기 완결적이지 않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개선과 변화의 방향은 어느 일방의 주도로 이뤄질 수는 없으며 노사정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가다듬어질 것이다.

사업장의 임금과 근로조건이라는 협소한 시각에서 눈을 돌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 수준에서의 다국적기업 규제를 모색할 과제가 한국의 노동조합에게 제기되는 시점이다.

참고 사이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www.oecd.org
국제금속노련(IMF)	www.imfmetal.org
국제노동기구(ILO)	www.ilo.org
국제화학산업협회(ICCA)	www.icca-chem.org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	www.icem.org
기업자문위원회(BIAC)	www.biac.org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www.tuac.org
산업자원부	www.mocie.go.kr
한국RC협의회	www.krcc.or.kr
Responsible Care	www.responsiblecare.org
UN글로벌콤팩트	www.unglobalcompact.org

참고문헌

강연배(2004), 다국적기업에 대한 노사관계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제노동연구소(1991), ILO조약권고집(1919-1991), 돌베개.

노동부(2000), ILO 주요협약집.

산업자원부(200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핸드북.

ICFTU(2004), A Trade Union Guide to Globalization (second edition).

ILO (2004), Annual Report.

E. Cairola & A. Chiarabini(1998),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 Trade Union Training Guide.

ICCA(2006), Responsible Care 1985-2005.

Ingeborg Wick(2005), Workers' too or PR ploy?, Friedrich Ebert Stiftung.

OECD(2006),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06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ntact Points Report by the Chair.

TUAC(2006), TUAC Internal Analysis of Treatment of Cases

Raised with National Contact Points February 2001 - September 2006.

TUAC(2006), European Works Councils &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다국적 기업에 대한 환경분야 국제규약

임지애(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팀 국장 limja@kfem.or.kr)

상황1.

중국에 진출한 마쓰시타(松下)와 네슬레, 펄시콜라, 3M 등 33개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환경법규 위반 혐의로 일제 조사를 받고 있다¹⁾.

중국정부는 이들 다국적 기업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리스트'에는 세계 500대 기업이 상당수 포함됐으며 중국 현지에서 그동안 환경보호 모범 기업으로 행세를 해왔다는 점에서 세간에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500대기업 랭킹 47위인 상하이(上海) 마쓰시타는 오염처리 시설 미비로 기준치를 초과해 폐수를 방류했으며 175위의 미국계 펄시콜라(지린성(吉林)성 장춘(長春))도 폐수 오염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500대 기업중 53위인 네슬레(상하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검증절차 없이 공장을 가동했으며 심지어 3M은 환경영향 평가 심사를 밟지 않고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나라별로는 일본(11개)과 미국(8개)계 기업에 이어 스위스 독일(시멘스)계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업종별로는 식품·전자·화학·기계 제조 등 주요 산업이 망라돼 있다. 이들 기업들의 생산 거점은 상하이 저장(浙江) 푸젠(福建) 광둥(廣東) 쓰촨(四川) 등 중국 전역에 산재해 있다.

1. 들어가며

1) 헤럴드경제, 2006년 11월7일

1980년대 후반이후 진행된 전 세계적 규제완화와 시장경쟁 확대의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에서 기업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의 물결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사회의 권력구조를 국가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표²⁾한 기업과 나라를 포함한 세계 100대 경제주체 중에서 다국적 기업은 29개나 올라와 있으며 부가가치기준 세계50대 기업의 부가가치 총액은 전 세계 GDP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인 정유업체 엑손모빌사의 부가가치 총액은 총 630억달러(45위)로 파키스탄(46위)의 62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제너럴 모터스사의 부가가치총액은 페루와 뉴질랜드의 부가가치 총액보다 앞서 있다.(황상규, 2005:32)

기업의 경제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세계자원의 주요 이용자인 기업의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등 전 지구적 환경위기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기업은 단순히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적 책임 외에도 환경·사회적 영역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2001년 말 크리스마스를 겨냥하여 출시된 소니사의 play station이 네덜란드 세관으로부터 수입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 원인은 play station 부품중 모니터와 시스템본체를 연결하는 전선피복에서 중금속인 카드뮴(Cd)이 허용기준인 100ppm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소니는 수입금지 조치 및 부품교체, 기회손실 등으로 약 20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 1998년 나이키는 파키스탄과 캄보디아에서 아동을 고용·생산하여 세계적 문제를 일으켰고 나이키는 이로 인해 영업이익의 37%가 급락하였다.

2) UNCTAD, UNCTAD/INF/PR/47, database on largest TNCs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었던 엔론은 부정회계 등의 불투명한 기업경영으로 인해 결국은 파산하였다.

이들 기업들은 이윤추구만을 앞세운 기업들이 인권과 윤리 등 환경·사회 책임을 도외시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다국적기업³⁾에 대한 환경 분야 국제규약은 시대별 다국적기업 경제활동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환경운동의 발전에 따라 기업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의 한 주체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다국적 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발생과 국가간 이전, 환경오염 발생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규약과 발전, 그 내용 등을 파악하고 향후의 발전 과제를 제출하고자 한다.

2. 다국적기업과 환경

세계 경제의 단일화 추세 속에 생산의 다국적화는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을 나누고 환경부담은 생산지역으로만 전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환경손실과 오염은 국가 간 이전될 수는 있으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무역을 통해 투자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지구적 차원의 오염은 순환을 반복하게 된다.⁴⁾

자본의 무한 증가 욕구는 경제의 세계화를 만들었지만 이는 이면에 환경문

3) 다국적기업의 정의는 다양하다. 논자에 따라서는 최소한 6개국 이상에서의 사업 활동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다국적기업과 선진국 거대기업을 구분하여 후자를 초국적기업으로 이르기 도 한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다국적기업을 유엔과 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개 이상의 나라에서 자산(공장, 생산, 판매, 기타의 사무소)을 지배하는 모든 기업"이라는 정의를 사용하겠다.

4) 1970년대 이후 농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90개국 이상에서 이른바 '더티 더즌(dirty dozen: 독성이 가장 강한 12가지의 맹독성 화학물질)을 비롯하여 디디티(DDT), 엔드린, 클로로드레인 등 인체에 치명적인 몇몇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독성물질의 순환(circle of poison)현상 때문에 때때로 나쁜 나라에 수출 금지된 농약이 수입식품을 통해 본국에 되돌아오기도 한다. 힐러리 프렌치, *Vanishing Borders Protecting the Planet in the Age of Globalization*. World Watch. 2001년

제의 세계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0세기 인류역사상 대표적인 환경재난을 살펴보면 오염산업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후진국으로 이전됨을 알 수 있다⁵⁾.

먼저 193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산업선진국에서 환경관리 재단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1930년 겨울 벨기에 류즈벨리 대기오염사건으로 60명이상이 사망했고, 1952년 영국 런던 스모그 사건으로 1만 2,000여명이 죽었으며, 1950년대와 60년대에 일본에서 발생한 수은과 카드뮴 등 중금속에 의한 미나마타 사건과 이타이이타이 사건, 화학공단의 유해물질로 인한 옷가이 천식사건 등으로 수백 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천명이상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걸려서 슬한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1950년대부터 70년대에 집중적으로 환경재난이 발생했다. DDT와 같은 화학약품으로 인한 자연 및 인명재해가 나타났고, 유해화학폐기물로 인한 러브커벨사건이 일어났으며, 1979년에는 트리마일 원전 방사능 누출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산업 선진국에서 먼저 발생한 재난이 1980년대에 들어서서 후진국과 후발 개발도상국에서도 심각한 양태로 나타났다. 후진국의 개발필요성 때문이었던 점도 있지만, 선진국의 공해산업 플랜트가 1970년대 전후로 자본을 필요로 하면서도 공해에 둔감한 후진국에 집중적으로 수출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1984년 12월 2일 인도보팔에 있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유니온 카바이드 사의 농약공장 저장탱크에서 메틸이소시아나이라는 유독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주동안 6,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까지 1만6,000명이 죽었다. 이는 세계적으로 최악의 환경재앙의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⁶⁾

1987년을 기점으로 발생한 멕시코시티 대기오염사건은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세계최악의 대기오염도시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역시 1987년에서 88년 사이에 이탈리아의 산업폐기물이 아프리카의 나이

5) 녹색전망, 최병두 외 지음. 도요새. 2002년 14-15쪽

6) 힐러리 프렌치, *Vanishing Borders Protecting the Planet in the Age of Globalization*. World Watch. 2001년

지리아 코코향에 몰래 버려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한국에서도 1980년대 초 온산공단의 피질발생 이후 울산과 전남 여수 등지에서 비슷한 산업재해가 나타났다.

선진국의 공해산업이 집중적으로 후진국으로 수출되던 시기를 일반적으로 환경제국주의 (environmental imperialism) 의 출현 시대로 부르기도 한다.

환경제국주의란 자연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은 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반면, 후진국에서는 환경적 부담을 떠넘기면서도 후진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선진국 경제에 종속시키는 형태를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의 제조업부분 총 해외직접투자(FDI)중에서 화학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8%에서 1998년 34%로 증가했다. 1998년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 중 약 41%가 화학 산업이었으며 콜롬비아에서는 22%에 달했다.⁷⁾

1970년대 이후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산업재구조화를 통한 산업기지의 이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가의 경제성장은 일본등 선진국의 생산기지 이전에서 기인한다.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을 비롯한 신흥 공업 국가들에서도 산업재구조화가 진행되고 비교열위의 산업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다.

한국, 대만 등 신흥공업 국가들의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다른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로 이전시켰다. 한국의 섬유생산업체들은 최근에 카리브에 투자하였고, 대만 업체들은 파나마에 투자하였다.⁸⁾

선진국의 비교열위 산업과 국제 분업구조를 통한 생산기지의 이전은 고 오염, 고 에너지소모, 고 자원소모의 오염산업을 개발도상국가로 이전시키게 된다.

일본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오염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 산업의 60%, 석유석탄의 49%, 가죽, 피혁의 58%, 철강의 46%, 비철금속의 63%, 금속제품의 70%를 아시아로 이전하였다.⁹⁾

7) 힐러리 프렌치. *Vanishing Brders Protecting the Planet in the Age of Globalization*. World Watch. 2001년. 90쪽

8) 블라드미르 앙드레프(Wladimir Andreff)지음 .우석훈 옮김. *세계화시대의 다국적 기업*. 문원출판. 1999년 36쪽

9) 1993년 일본해외진출 총람에 근거

현재 중국은 이미 세계 제일의 투자대상국이며 투자의 주요업종은 제조업(중10) 으로 '세계의 공장', '세계의 가공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1992년 정식수교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02년에는 한국기업의 최대투자대상국이 되었다. 한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80%이상이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으로 전체건수의 86.7%, 투자액의 83.4%를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에는 사양산업의 공장이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90년대 중반부터는 국제 분업을 통한 생산기지의 이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된 다국적기업의 오염물 및 오염산업의 국가간 이전의 문제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 외에도 90년대 이후에는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상품과 자본 유입의 무국경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현상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자유무역으로 인한 공기업의 민영화와 이로 인한 물, 전기 등 공공재의 사유화, 식량 공급 외에 환경·문화적 가치를 포함한 다원적 기능을 가진 농업의 붕괴, 농축산 다국적 기업에 의한 광우병, GMO농산물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시장의 유통과 국민안전의 위협등도 다국적 기업의 경제행위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지난 1998년 유럽연합은 유전자 조작 콩과 옥수수식품에 그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일본 등도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유럽의 GMO 표시 의무화가 무역장벽이라고 문제제기 하였으며 미국정부는 아르헨티나 및 캐나다와 힘을 합쳐 이런 EU의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WTO에 제소하였으며 몇 달 뒤 유럽의회는 GMO 함유식품이라는 표기를 추적할 시스템을 갖추는 조건으로 GMO를 함유한 식품이 유럽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EU의 법을 통과시킨바 있다.¹¹⁾

10) 총 외자기업의 70%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11) 월드워치연구소, 지구환경보고서2004, 도요새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후 진행된 산업구조조정은 국가의 환경 질을 심각히 저하시키기도 한다. 멕시코의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 수출 산업 중 80%는 2%미만의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미국에 기반을 둔 기계, 섬유, 화학분야의 다국적 기업들로 '독성이 강한 위험 물질을 처리하는 산업'에 속한다.¹²⁾

3. 지구적 차원의 환경위기와 지속가능한 발전, 기업

전 인류사회의 운명과 직결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전역의 대홍수·가뭄·폭설 등 기상 재해의 발생과, 사막화, 오존층파괴, 열대림 파괴 등 환경문제의 전 지구적 확산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탄생의 주요 모태가 되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T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는 113개국이 참가하여 환경 문제를 논의한 최초의 국제회의이며 지구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되었다.

이후 199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 또는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리우회의)는 1972년 6월에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 20주년을 기념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목표로 개최되었다.

전 세계 180개국 3만여 명이 참석한 리우회의에서는 리우선언을 비롯하여 Agenda 21과 기후 변화협약 등을 채택하게 되었다.

본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은 최초의 국제적 환경선언문이기도 하다.

92년 리우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12) 한국 농어촌사회연구소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농민과 사회 2006년 봄호, 232쪽

채택하였으며 환경, 경제, 사회 3개 분야를 종합하여 자연환경과 사회 환경을 결합 발전시키는 것으로 시공간상의 정체성 실현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환경과 경제의 일치 발전과 시공간상의 인류의 공동발전을 강조한다.

지속가능발전은 또한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환경을 보존하고 사회적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과 경제, 사회를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

지속가능한 발전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부하의 절반이상이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기업의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갈수록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90년대 중반부터는 환경친화기업, 환경인증제도가 유행처럼 번져갔다. 환경인증제도가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전적으로 보증해 주지는 못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경영진들의 인식을 상당부분 바꿔 놓은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노력은 재무경영 → 환경경영 → 윤리경영 → 지속가능경영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는 환경경영에서 한발 더 나아간 지속가능경영의 흐름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데서 벗어나 환경, 인권, 노동권, 부패방지, 공정경쟁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경영을 해야 비로소 소비자나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윤리적 차원에서 선언적으로 요청되었지만, 이제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과 요건들이 점차 구체화되고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경영이 국제규범으로 제도화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라도 사회적 책임 경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2008년까지 사회책임(SR)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기업의 사회책임(CSR)의 정착여부가 최종

적으로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사회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기업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 평등하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원칙을 세우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21세기 환경위기의 세기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자 글로벌 경제에서의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에 대한 기업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이행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노조, 지자체, 시민단체 등 각 사회주체로 확대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오는 2008년 3월까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사회적 책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1) 기업사회책임 제기배경

(1) 기업사회책임의 정의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발전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후 국내의 여러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들을 추진해 왔다. 특히 기업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목표로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기업의 경제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환경과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위원회, 2005)

미국 및 유럽 선진국에서 20세기부터 시작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개념 정의에 있어 아직은 유동적이며

용어 또한 기업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구체 개념 규정은 다를 수 있으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 접근 자세는 동일하다. 즉, 경제적 이윤추구 외에도 환경, 사회적 책임 이행과 경영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이다.

EU위원회가 2001년 7월에 공포한 그린페이퍼(green paper) 'Promoting a European framework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따르면, 기업사회책임이란 '기업들이 사회 및 환경에 관한 배려를 영업활동 및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의 상호관계 중에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개념(사회 및 환경에 대한 배려와 기업활동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으로 정의 된다.(황상규, 2005:173)

(2) 기업의 전략적 선택인 기업사회책임

세계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은 더 이상 단기적 수익성이나 제품가치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 체제에서 중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기업의 생존전략이다.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동기가 기업의 이미지 관리나 홍보 차원의 접근, 단기적 시도이어도 기업이 기업사회책임을 인식,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의 동기에 상관없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정부,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제안하면서 기업의 사적 이익과 시장의 가치, 사회적 정의가 일치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경영을 사회 시스템화 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더 나아가 범세계적 차원의 연대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기업사회 책임의 국내외 현황

(1) 국제동향

20세기 들어 UN, OECD 등 국제기구와 미국과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사회 책임 논의들이 선행되었다. 기업의 경제행위로 인한 사회, 환경 영향에 대한 윤리적·환경적 제한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 기업의 사회책임 이행권장을 위한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등의 각 분야별 원칙을 수립하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개발과 기업의 기업사회책임 성과를 공개하는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주요국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미국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역사전통 속에서 윤리경영과 투명회계를 중심으로 기업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977년 해외부패 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1986년 기업윤리 행동원칙, 1989년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법 등을 제정하였다.

2000년에 들어 사회적 책임투자가 활성화되었으며 2001년 엔론 및 월드컴의 회계부정사건이 발생 하면서 기업사회 책임 및 사회적 책임 투자에 대한 인식과 실행이 더욱 확대되었다.

미국의 사회적 책임 투자는 1984년 400억불에서 2003년 약 2조1,640억불로 증가하여 전체 펀드시장의 12%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희망포럼, 2005:14, 문국현, 2006)

유럽

기업사회책임에 대한 논의가 기업, 주주, 노동자, 사회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함께 중시하는 유럽식 윤리문화 속에서 발전하였다.

20세기 들어서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전통을 세웠으며 2001년에 프랑스는 기업의 재무, 환경, 사회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으며 2001년에 영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확대를 위해 CSR차관을 임명하였다. 2004년 EU는 기업연례보고서 작성지침을 확정하였다.(희망포럼, 2005:14, 문국현, 2006)

(2) 국내동향

한국전쟁이후 경제재건발전을 위한 수출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은 재벌에 대한 각종 특혜로 재벌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시켰으며 군사정권과 부정 결합한 재벌은 각종 불법 정치자금 지원하고 내부적으로는 변칙 증여와 상속 등의 부패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정치사회적 민주화와 함께 재벌의 정권과의 부정적 커넥션은 점차 감소하였으나 내부적 비윤리 경영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기업의 기업사회 책임 이행 수준은 초보적 단계이며 정부차원으로는 2008년 ISO 사회책임 표준가이드라인 제정에 대응한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윤리강령의 채택 등 기업사회 책임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국내 500대 기업의 70%가 윤리경영의 기본단계인 윤리강령을 채택하였다(희망포럼;2005)

기업의 사회공헌은 1984년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가 효시로 이후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표1 참조)

표1> 국내주요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추이¹³⁾

(단위: 억원)

	2005년	2006년
삼성그룹	4779	4992
SK	1050	1100
포스코	808	전년수준
LG그룹	710	800
현대차그룹	400	전년수준
KT	150	전년수준
교보생명	110	120안팎
이랜드	104	110억 안팎
유한킴벌리	98	100억안팎
CJ	97	100억안팎
한화그룹	55	전년수준
GS칼텍스	100	대폭늘릴예정

그러나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 구성요소 이지 전부는 아니다. 기업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으로 한 단계 끌어올려 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실천해야 한다(시민의 신문:2005)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속가능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SR)는 2003년 이후 삼성 SDI, 현대기아자동차, 한화

13) 한겨레 2006년 1월25일

그룹 등 10여개의 국내기업이 발간하고 있다.(한국과학기술원 사회책임경영 연구센터, 2006) 그러나 각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의 내용은 기업사회책임 이행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주요활동으로는 기업이 발행하는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의견 제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정도에 대한 평가, 사회책임투자 등이다.

시민단체의 기업사회 책임운동에 대해 기업은 반기업적 활동으로 기업의 경제행위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면서 기업과 시민단체는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30대 주요기업에 대해 환경경영 및 윤리경영체계, 정보공개, 인권보호, 노동권보호,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 에너지 및 자원절약, 뇌물 및 부패방지, 공정경제, 납세 및 사회공헌의 10개 항목에 근거하여 사회책임이행 정도를 평가한바 있다.

표 <지속가능한 경영과 투자(SMI)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요>¹⁴⁾

14)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위원회 '지속가능 경영과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SMILE-1', 2005.5

분야	부문	관련규범	요건
문화적 지속 가능성	1. 환경경영 및 윤리경영 체계	ISO14001	-환경경영체계 구축 및 운영 -윤리경영체계 구축 및 운영 -비윤리적 산업 및 관행 배제
	2. 정보공개	OECD③	-경영관련 재무지표의 공개 -환경·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지역사회 피해 관련 자료 공개
사회적 지속 가능성	3. 인권보호	GC① (세계인권선언)	-인종,성별,출신,종교에 의한 차별 금지 -사상,양심,종교 자유와 권리보호 -평화적인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보장
	4.노동권보호	GC② (ILO노동 기본권선언) OECD④	-강제노동, 의무노동, 아동노동 철폐 -산업보건 및 산업안전 실현 -남녀고용평등,장애인,사회적 약자보호
	5. 소비자보호	OECD⑦	-제품의 안전성과 생태적 설계 -허위과장 광고 추방과 소비자정보보호 -제조자책임(PL)과 소비자 피해 구제
	6. 과학기술 정책	OECD⑧	-연구개발(R/D)투자와 기술력 확보 -과학기술의 윤리적 이용과 사용 -기술 및 노하우의 사회적 확산 노력
환경적 지속 가능성	7. 환경보호	GC③ (환경개발리 우선언) OECD⑤	-환경경영의 실행과 환경보고서 발간 -환경성과평가와 전과정평가(LCA) 도입 -청정생산기술시스템의 도입과 시행
	8. 에너지 · 자원절약	(기후방지협 약 및 교토의정서)	-에너지 효율의 향상과 최적관리 -자원절약과 재활용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경영
경제적 지속 가능성	9. 뇌물 및 부패방지	GC④ (UN부패방지 협약) OECD⑥	-법규준수 및 뇌물수수금지 -분식회계 금지 -전관예우 배제와 정경유착 금지
	10. 공정경쟁	OECD⑨	-기업지배구조 개선 -가격고정,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금지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 하도급 금지
	11. 납세 및 사회공헌	OECD⑩	-납세 의무의 준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이익의 실현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과 사회책임

환경운동연합의 기업별 지속가능경영 이행 평가는 이해관계자에 의한 국내 첫 평가라는 역사적 성과와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기업 및 보수언론은 시민단체가 기업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본인들의 고유한 영역을 뺏긴 양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급기야는 조선일보의 오보로 언론중재위원회 까지 가는 해프닝을 겪었다.

기업의 사회책임이행 평가는 기업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평가도 필요하며 더욱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의 활동은 반기업적 활동이 아닌 반부패, 반인권, 반윤리, 반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운동이다.

3) 기업사회 책임 이행을 위한 기업의 과제

기업은 기업사회 책임 이행을 윤리경영을 확대한 개념인 사회책임 경영을 도입하여야 하며 지속가능경영의 의지를 밝히고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경영 의지와 방침을 채택해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기업경영의 기본 방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ISO14001 규격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에서 환경방침을 수립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방침에 의해 지속가능경영의 목표와 세부목표 등이 수립되고, 시행되어 나가게 된다.

(2) 이사회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당이사를 선임해야

원활한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위해서는 이사회 차원에서 이를 전담하는 이사를 선임하고, 이를 지원할 전담실무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선임된 이사는 가칭,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기업 전반의 지속가능 경영을 챙겨 나가게 될 것이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윤리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기존의 조직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프로그램 적극 활용해야

지속가능경영에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은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보고서는 기업내부의 경영과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어주는 架橋(가교)와 같다. 처음부터 완벽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회사의 사정과 수준에 맞는 보고서를 발간해 나가면서 이를 사회에 공개하고 함께 대화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하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을 받는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법론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UN의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s)와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또한 기업의 정보공개, 인권, 노동권, 환경, 뇌물방지,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지속가능경영을 요구하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는 위기적 요인과 기회적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경우, 그 기업은 글로벌 규범의 적합성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신뢰성과 좋은 인지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5.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규약

1) 국제기구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은 현재 법적 강제력이 없는 선언·지침·강령차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제안은 아래와 같다.

(1) UN Global Compact

UN(국제연합)은 지난 2000년 "The Global Compact"출범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참여요구를 구체화 하였다. 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인권(2),노동(4),환경(3),반부패(1) 영역에서 10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세계화로 야기된 인권·노동·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요구하는 기본 이념을 가지고 기업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구체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권(Human rights)

원칙1. 우리기업은 국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권의 보호를 지원하고 준수한다

원칙2. 부적절한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노동표준(labour Standards)

원칙3. 집회의 자유와 단체협상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원칙4.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라도 제거한다

원칙5. 아동노동을 근절한다

원칙6. 채용과 근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제거한다.

환경(Environment)

원칙7. 환경보호를 위해 예방적 활동을 지원한다

원칙8. 더 나은 환경적 책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원칙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부패방지

원칙10. 모든 종류의 부패금지

(2) OECD(국제협력개발기구)MNEs Guideline

지난 1977년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2000년 개정) 이후, 1999년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을 제정하고(2000년 개정), 1999년 외국공무원뇌물방지협약을 제정하였다.(희망포럼,2005:14)

현재 33개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제1장 개념 및 원칙

가이드라인의 개념과 의의, 정부의 역할 등

제2장 일반정책

11개 조항의 이행항목제시(SD, 인권, 지역사회, 인적자원, 지배구조 등)

제3장 정보공개

기업의 활동, 구조, 재무상태 및 실적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 공개,사회/윤리/환경정책에 대한 정보공개 등

제4장 고용 및 노사관계

근로자 권리존중, 아동노동 근절, 강제노동 근절,차별방지,단체협약지원, 현지인력채용 및 훈련 등

제5장 환경

환경경영시스템 수립 및 유지, 목표설정, 목표 진척에 대한 정기적 감사, 전 과정평가, 교육과 훈련 등

제6장 뇌물방지

투명성강화, 징계절차, 불법적 정치기부 방지 등

제7장 소비자 이익

건강과 안전에 대한 기준 충족, 정보제공, 소비자 불만 처리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

제8장 과학과 기술

지적재산권 보고, 기술및 노하우의 이전, 현지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유대 등

제9장 경쟁

경쟁적 행위 및 협정체결방지 등

제10장 조세

조세법규 준수 등

(3) ISO(국제표준화기구)

ISO14000

ISO14000은 국제표준화기구가 1993년부터 제정한 환경관리 국제표준으로서 환경관리체계, 환경관리체계 심사비준, 환경마크, 생명주기 평가, 환경행위 평가 등 국제 환경 관리 분야의 연구 및 실천을 포함하며 동일한 환경관

리 체계 및 제품의 표준과 규범화된 인증심사비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ISO14000 시리즈의 5개 표준은 환경관리체계 및 환경관리체계 심사비준에 관련된 표준으로서 아래와 같다.

ISO14001 환경관리체계-규범 및 사용지침 규범

ISO14004 환경관리체계-원리, 체계와 기술 통용지침

ISO14010 환경 심사비준 지침-통용원칙

ISO14011 환경관리심사비준-심사비준 절차-환경관리체계 심사비준

ISO14012 환경관리심사비준 지침-환경관리 심사비준 인원의 자격요구

ISO26000

2008초 제정될 ISO 26000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활용 될 전망이다.

오는 2008년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SR·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은 지난 2006년 5월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안(ISO26000) 초안이 완성됐다.

사회적 책임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윤리·투명·환경 등 공공재적 가치를 향상시켜 기업 이미지는 물론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책임의 국제 표준안 초안은 △지배구조 △환경 △인권 △노동 △공정관행 실천 △소비자 문제 △지역사회 문제 및 사회개발 등 주요 지침 7개의 조항을 담고 있다.

(4) 유엔 '인권에 관한 다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들의 책임규범'

유엔은 1974년 총회 결의로 '신 국제 경제 질서 확립 행동 계획'을 채택하면서 '다국적 기업에 관한 국제 행동 강령'의 제정, 채택, 실시를 촉구한 바 있다. 그 결과 같은 해에 유엔 다국적기업위원회와 유엔다국적기업센터가 구성되어 다국적 기업행동 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 소위원회 결의에 의해 2003년 8월 13일 승인되었다.

내용 중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관한 장은 일반적·정치적 원칙, 경제·금융

및 사회적 원칙, 정보공개 원칙으로 나누어져 있다.

내용 중 '환경보호에 관한 의무'의 조항으로는 '다국적 기업과 기타 사업체들은 국내법, 관련법규, 행정관행 및 기업 활동을 하는 해당국의 환경보존 관련 정책들에 따라서 활동해야 하며 또한 인권, 공중위생과 치안, 생명윤리 및 예방원칙과 더불어 환경에 관한 관련 국제협정, 원칙, 목적, 책임과 기준들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더 폭넓은 목표에 기여하는 자세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¹⁵⁾

(5) 국제노동기구(ILO)의 '다국적 기업 및 사회정책에 대한 3자 선언'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ffice)가 1977년에 채택되었으며 2000년 11월 개정되었다. 일반정책, 고용, 직업 훈련, 근로 및 생활조건, 노사관계의 다섯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58절로 이루어져 있다. 유엔이나 OECD지침과는 달리 다국적 기업의 행위 중 사회와 노동에 관련된 부분만을 국한하여 다룬다. 다국적 기업에 대해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생산이전에 따른 약 영향의 최대한 완화'의 내용이 있다.

2) 국제환경협약(다자환경협정-MEAs)

(1)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산화물 등의 온실가스가 대기층에 누적되어 지구 복사열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생기는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해수면상승, 사막화 등을 예방하기 위한 협약이다.

1970년대 지구온난화 문제 대두되고 1980년대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2년 리우 UN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었으며 기본원칙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사전예방, 형평성이다.

선진국(Annex 1 국가)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결정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15) 국제민주연대, 『해외한국기업 인권현황백서』, 2003년 10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이 논의를 구체화 시켰는데 Annex 1국가에 대해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기준 평균 5.2% 감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5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1위는 미국(24.3%)이며 중국이 2위(14%), 러시아 3위(10%), 우리나라 10위(1.9%)를 차지하고 있다.

(2) 생물다양성 협약(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1987년 유엔환경계획이 생물종 보호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해 1992년 리우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으며 169개국이 서명하고 1993년 12월 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협약비준서를 제출하고 1995년 1월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전문과 42개 조항, 2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국가별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실천해 나가도록 생물자원의 주체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의 주요내용은 생물다양성의 본질적 가치, 생물권 진화와 지속적인 생명체계 유지를 위한 생물다양성의 중요역할 인식, 생물다양성의 현저한 감소현상에 인류의 활동이 관여됨을 인정, 각국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가짐을 재확인, 생물다양성의 감소 또는 손실의 원인 예측 및 방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구차원의 국제협력, 생물다양성 손실문제 해결능력의 실질적인 개선과 추가적인 재원의 제공 및 관련기술에 접근 등을 규정하면서 궁극적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서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주권과 인류의 공동관심,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자원에 대한 접근, 본 협약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과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반 내용을 규약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생물다양성에 대한 한 나라의 배타적 주권(Sovereign Right)이 인정 되었으며 주로 선진국에서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신품종을 육종한 육종가가 주장하는 그 품종에 대한 육종가의 권리(Breeders Right), 유전자원 원산국에서의 그 자원이 현재까지 있을 수 있게 한 토착 농민의 농부권(Farmer's Right)등이 모두 인

정되었으며 현재는 유전자원의 사용에 대한 이익의 공유를 반영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약으로의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식량 농업 유전자원의 경우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 문제에 관하여 개도국과 선진국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에 관한 협약(CITES,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워싱턴협약」이라고도 불리며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 120여 개국이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 가입하였다. 야생동식물의 수출입을 인, 허가 제도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4)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오존층 파괴 물질의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 촉진의 목적으로 1985년의 빈 협약을 기초로 1987년에 탄생하였다.

비엔나 협약에서 5종의 CFC(염화불화탄소)¹⁶⁾물질과 3종의 할론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CFC의 단계별 감축 및 비협약 체결국가에 대한 통상제재를 결의하였다.

89년 몬트리올 협정에 따라 선진국은 96년부터 CFC생산 및 수입이 금지됐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은 지난 9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 오는 2010년에는 사용이 완전 금지된다.

(5)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통제 및 그 처리에 관한 협약으로 1989년 3월 채택되었다. 선진산업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해폐기물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시행을 위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1992년 12월에

16) 냉매제와 분사제, 발포제, 세정제 등으로 폭 넓게 사용되었으나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제정하였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전 및 처리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만들었으나 불법 수출자 및 수출국의 법률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특별히 직접투자방식으로 오염산업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책임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오염산업 및 상품과 기술이전으로 인한 투자대상국의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6) 런던덤프협약(London Dumping Convention)

지구환경의 최후보루 해양을 지키기 위해 1972년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이 탄생되었다.

이 협약은 핵폐기물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0월 러시아의 동해안 핵폐기물 투기사건으로 해양오염의 위험성을 경험하였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하였고 1994년 1월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7) 스톡홀름협약 (POPs 협약, persistent organic pollution, 잔류성 유기오염물질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제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해물질로 주요물질로는 농약류와 산업용 화학물질, 다이옥신 등이 있다.

60-70 년대이래 산업, 농약용으로 사용된 화학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규명됨에 따라 2001년 5월 12개 POPs를 규제하기 위한 POPs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규제대상 12개 POPs는 염화페비닐,다이옥신,푸란,올드린,덜드린,DDT,엔드린,클로르덴,헥사클로르벤젠,마이렉스,톡사펜,헵타클로르이다.

환경관련 국제협약의 한계는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원칙의 이행은 각 주권 국가들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주권국가들로 하여금, 채택된 국제환경법 원칙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각국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 국제협력을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한

강제이행의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1999년 당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UNEP을 세계무역기구에 상응하는 조직으로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세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립적이고 확고한 세계 환경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3)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수-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

지속가능경영은 이제 더 이상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위한 스스로의 전략적 선택이 되고 있다.

몬산토는 2002년 발생한 애니스톤 공장의 PCBs유출사고로 7,000억 원 (\$700million)을 주민에게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으며 PCBs유출사건이 발생한 2002년 당시 몬산토의 주가는 \$35에서 \$15이하로 폭락하였다.

기업의 위기관리측면에서의 환경적 위험의 예방은 필수요소가 되었다.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은 재무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며 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표> 지속가능경영의 환경·경제·사회적 책임과 세부내용

영역	세부내용
환경적 책임	환경경영체제 구축 친환경제품 개발 노력 기후변화 대응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생태산업단지 조성 환경보호활동 수행
경제적 책임	기업의 지속적 성장 기술과 경영 부문의 혁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투명경영과 공정경쟁 일자리를 창출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에 기여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활동의 수행

윤리경영, 인권보호
반부패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
기업연금의 책임투자 시행
고객정보 보안
보건안전과 재난대응

지속가능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각 기업에 따라 독자적 이름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 포드(Ford)의 'Corporate Citizenship' 이나 BMW의 'Sustainable Value', SIEMENS의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는 기업별 지속가능경영의 또 다른 이름이다.

국내에서도 지속가능경영인식도는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2004년 산업자원부 산업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 윤리경영실태 조사결과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개선도는 2003년 대비 공기업(16.65%), 민간기업(6.64%)모두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체제 강화는 환경경영에서 지속가능경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 환경규제를 넘어서기 위한 지속가능한 경영철학과 체제 구축.
- 기업지속가능발전의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사회구조적 여건 정비.
- 환경감사제도도입, 환경관리체계구축, 지역환경보전활동 참가.
- 생태효율제고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Eco Efficiency 달성을 위한 탈 물질화 방식 개발, 순환형 생산체계구축 등을 의미하며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일정규모 또는 특정 산업의 기업들이 환경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 및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알 권리(Right to-know)를 법제화하여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는 사회책임투자의 기초자료가 되고, 정부의 법적 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내부지침으로 확대되어 적용되는 등 중요도가 증가하

고 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계량적 측면이 가능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자 국제적 차원 및 국가차원에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다.

기업지속가능성 평가요소는 크게는 경제, 사회, 환경 3가지 분야로서 환경 분야는

- 환경경영시스템 및 전담조직
- 환경감사/성과평가/회계
- 기후변화대응, 환경경제효율성 제고 노력
- 청정생산 및 녹색구매
- 친환경제품 개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대표적 지속가능지수 평가 와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으로는 아래의 내용과 같다.

(1)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United Nations, 국제연합)

1997년 UNEP (유엔환경연합,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과 국제적 환경단체인 환경책임경제연합(CERES)가 합작 설립한 UN의 협력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TBL(Triple Bottom Line)시스템이라 하여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분석,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해당 기업 및 사회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GRI 채택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2002년 112개 기업에서 2005년 9월 현재 671개 기업으로 증가하였으며 한국기업 중에는 삼성SDI, 현대자동차 등이 1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은 GRI기준에 따라서 Sustainability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희망포럼, 2005:14)

GRI Guideline은 다양한 지속가능보고용 지표들의 취지를 수용한 보편적 기준이며 기업의 활동, 제품, 서비스의 경제, 환경, 사회 영역에 대하여 자발적인 보고를 하기위한 공시(disclosure) 프레임 워크이다.

GRI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비전 및 전략(Vision and Strategy)
2. 프로파일(Profile)
3. 정부구조 및 경영시스템(Governance Structure & Management Systems)
4. GRI구성 인덱스(GRI Content Index)
5.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
 -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 Indicators)
 - 환경성과(Environmental Performance Indicators)
 - 사회성과(Social Performance Indicators)

GRI의 환경성과 지표는 총 35개(핵심 16개, 부가 17개) 분야로서 아래의 내용과 같다.

자재

1. 물이의 사용한 형태별 총 자재
2. 조직외부의 소스에서 나온 폐기물(가공 또는 미 가공)로써 재활용된 자재의 비율

에너지

3. 1차 소스로 분류된 직접 에너지 사용
4. 간접에너지 사용
5.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사용과 에너지 효율 향상 이니셔티브
6. 주요제품(연 단위로 환산한 제품수명 기간 동안 에너지 필요량)의 에너지 소비량
7. 조직차원의 여행, 제품수명관리, 에너지 집약자재의 사용 등 기타 간접 에너지 사용

물

8. 총수자원 사용
9. 물의 사용에 의해 상당히 영향 받는 취수원과 관련 생태계/서식지
10. 연간재생가능한 물에 대한 비율로 표시된 지하수와 지표수의 연간 소실량

11. 물의 재활용과 재사용

생물다양성

12. 생물다양성의 풍부한 서식지 내에 소유, 리스, 관리하는 필지의 위치와 크기

13. 육상, 담수지, 해양환경에서 발생하는 활동(제품과서비스)이 생물다양성에 끼치는 주요 영향

14. 생산 활동 등을 위한 소유, 리스, 관리되는 필지의 총량

15. 구매 또는 임대된 땅 중에서 표면투과성이 없는 땅의 비율

16. 보호지 및 민감한 지역에 대한 활동과 운영의 영향

17. 사업 활동에서 야기되는 자연서식지의 변화, 보호 및 복구되어야 할 서식지의 비율

18. 원래의 생물다양성과 오염지의 종의 보호와 복구를 위한 목표, 프로그램

19. 사업 활동에 영향 받은 지역내부 서식지의 IUCN Red List(멸종위기 동식물 명단)에 올라가 있는 수

20. 보호지 내지는 민감한 지역 안이나 주변에서 현재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단위

배출·유출수·폐수

21. 온실가스배출

22. 오존파괴 물질의 사용과 배출

23. 형태별 NOx, Sox, 기타 중요 대기 배출 물

24. 형태별, 최종처리방법 별 총폐기물의 양

25. 종류별 주요 폐기

26. 총 수와 총 부피를 고려했을 때 화학물질, 기름, 연료의 증대한 유출

27. 다른 관련 있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

28. 바젤협약 첨부 1,2,3,8 약관에 명시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폐기물의 생산, 운송, 수입, 수출

29. 물의방류와 흐르는 물에 의해 증대한 피해를 입은 취수원과 관련 생태계/서식지

공급자

30. 지배구조와 경영시스템에 대한 대응에 설명된 프로그램과 절차의 환경관련 구성요소 대비 공급 장의 성과

제품과 서비스

31. 주요제품과 서비스의 증대한 환경적 영향

· 32. 제품사용기간의 종료시점에서 재생 가능한 제품들 무게의 퍼센티지와 실제 개인비용

준수

33. 모든 국제 선언문/협정/조약 및 환경이슈와 관계된 국가, 준 국가, 지역규정의 위반건수와 벌금.

운송

34. 물류에 사용된 운송의 증대한 환경영향

전체

35. 형태별 전체 환경비용 지출

(2) EcoValue21&IVA(Intangible Value Assessment)

EcoValue21은 Innovest와 Mogan Stanley, WBCSD, UNEP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환경평가신용모델이며 Innovest는 1995년 설립된 자산관리 서비스 기관으로 전 세계 50여개 산업, 약 1천500개 기업의 평가 등급(AAA-CCC)제공 및 기업조사 및 컨설팅, 포트폴리오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성과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여 금융기관에 정보를 전문 평가 및 컨설팅 기관이다.

환경관리능력, 지속가능성 위험, 전략적 수익기회, 운영위험, 역사적 책임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환경성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 지표는 아래와 같다.

표 <EcoValue21 세부평가지표>

환경관리능력	환경전략 환경경영 환경감사 환경회계,기업관리역량,환경보고서,공급사슬관리
지속가능위험	에너지 집약도와 효율성 자원효율적사용 제품 전 과정평가

	소비자가치관 변화로 인한 영향도 지역사회와의 협력
운영위험	독성물질 제품리스트 유해폐기물 공급사슬관리
전략적 수익기회	환경경쟁력 기업의 경쟁력 및 역량 환경기회 사업기회에 대한 가능성
역사적 책임	유해폐기물, 토양환경보전

(3) SIGMA(Sustainability - Integrated Guidelines for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 비즈니스 시스템 가이드라인으로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영국표준협회)가 제정했다. 조직 및 기업이 CSR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데 도움 주도록 고안되었으며 5가지 자본(자연, 사회, 인적, 시설, 재정)을 증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업 및 기관이 어떻게 사회적 책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4) BS8900 (Managing Sustainable Development)

BSI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준 및 권고에 대한 사항으로 기관의 사회, 환경, 경제적 분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관의 성과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framework 제공하며 주요하게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증진 가능, 신뢰 구축, 위험 관리, 학습 및 혁신 촉진, 내부 결속력 강화 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BS 8900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관계자 참여, 위험 관리, 전략개발, 가치 창조, 조직 문화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투자 의사 결정과정에서 기업의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투자

행위를 말한다.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DJSI지표를 개발하는 SAM그룹에서는 매년 전 세계 2,500여개 대기업을 평가하고, 이들 기업 중 상위 10%만을 경제, 환경, 사회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DJSI World'로 발표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경제·사회·환경위험 및 기회에 대하여 평가하는 SRI방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중 하나이다.

EIRiS(Ethical Investment Research Service) & FTSE

기업의 사회, 환경, 윤리적 성과를 조사, 평가하는 전문조사기관인 EIRiS와 FTSE(Financial Times London Stock Exchange)가 공동으로 개발한 FTSE4Good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경제지수를 글로벌 투자기관 및 자산관리기관들이 기업투자정보로써 활용하고 있다.

FTSE4Good의 평가는 EIRiS가 평가지표에 따라 대상기업을 조사, 분석한 자료로 이루어진다.

EIRiS는 1983년 교회 및 자선기금의 건전한 투자를 위해 기업의 윤리성을 평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을 계기로 시작하였으며 FTSE와 공동으로 사회적 책임투자를 위한 경제성지표인 FTSE4Good를 개발하며 지수개발 모형을 제공하였다.

FTSE4Good의 3가지 기준은 환경의 지속가능성, 이해관계자와의 긍정적 관계, 인권준수이며 각 부분별 정책과 운영, 결과를 구분하여 조사, 평가한다.

4) 글로벌 환경규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별 환경 전략은 산업별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 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환경보전 정책에 근거한 환경규제는 기업의 무분별한 경제 행위를 규제하기도 한다. 국가 간의 환경규제는 선진 환경기술을 기본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대국에게는 무형의 무역장벽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한국 내에서는 산업의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수도권 대기배출허용 총량제 추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IT산업까지 확대 실시, 사업폐수 저감 설비 의무화, 특정유해화학 물질 관리의 강화 등 규제의 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또한 산업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1995부터 청정 생산기술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전오염예방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기업의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정도는 미약한 수준이다.

국제적으로는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의 지구환경문제로 인해 산업 활동에 대한 국제적 환경 규제요구가 날로 심화 되고 있으며 현재 약 210개의 국제 환경협약이 발효 중이며 이 중 20여개는 무역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EU는 높은 선진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 걸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 전자장비 폐기물처리지침)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립되지 않은 전기, 전자 장비들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으로 2003년 2월 13일 채택, 발효 되었다.

회수, 재활용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 제품만 EU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2007년 1월까지 재활용 비율을 75% 까지 높이고 2015년까지는 95% 비율로 높여야 한다.

(2)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등은 2006년 7월부터 사용이 제한되며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전기·전자제품은 EU시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2003년 2월13일 채택, 발효되었다.

(3) ELV(End of Life Vehicle, 폐차처리지침)

2000.9.16 채택되었으며 자동차에 대해 2006년까지 차량중량의 85%를 리사이클 하고 80%를 회수/재이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4) EuP(Ecodesign requirement for Energy using Products,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

2003년 채택된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 설계지침은 제품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규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며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 EUROVI

2005년 1월 1일 채택되었으며 자동차의 배기가스 자기 진단장치 탑재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6) REACH(신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재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40여개의 화학물질관련 규정을 대체하게 될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지침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화학물질 규제정책이 1981년을 기준으로 신물질(2,700여종) 및 기존물질(100,100여종)로 분류하여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 (1981년 9월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5)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환경문제는 지구보호차원을 넘어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국제경제 및 통상과제로 부상했다.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 내의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에서는 환경과 무역에 대한 다양한 분쟁의 처리하고 있다.

6. 사회적 책임투자

사회적 책임투자란 재무적 수익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또는 윤리적 이슈를 고려하는 투자방식으로 1920년대에 미국감리교회가 도박, 주류, 무기업체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윤리적 투자(Ethical Investing)를 행하는 것에서 기원했다.

사회책임투자란 투자할 기업의 선택 시 기업의 경제적인 면 뿐만이 아니라 환경, 사회 공헌도, 기업지배구조 등 해당 기업의 다양한 사회적 성과 등을 비중 있게 고려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방식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투자는 큰 의미를 갖는다.

이후 사회운동(예: 반전운동, 환경운동, 반인종 차별 운동 등)의 성장과 함께 반공익적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다양한 펀드가 등장하였으며 연기금에 대한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사회적 책임투자) 적용조항으로 인해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및 유럽이외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투자의 유형으로는 자금의 흐름을 사회적 또는 환경적 기준에 따라 기업과 산업을 선별하는 투자로 돌리는 것에서부터, 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주주행동'에 동참하는 것,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주택계획과 소규모 사업 대출 등 지역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투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바이탈사인, 2001:112)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3000조원의 자금이 사회적 책임투자 방식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선진국의 사회적 책임투자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책임투자는 1984년 약 400억불에서 2003년 약 2조1,640억불로 증가하여 전체 펀드시장의 12%이상을 차지하며 투자수익률에 있어서도 일반 수익률 대비 25% 이상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은 지난 2000년 7월 '연기금법'법제화하여 기업사회 책임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연기금 관련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결정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윤리적(SEE)' 부분을 의무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사회 책임을 적극 지원하는 영국정부정책의 분수령이 되기도 하였다.(시민의 신문:2005)

UN은 SRI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책임 투자 원칙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PRI) 을 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이 자산기준 세계 20위권의 금융기관 대표와 60개 전문가그룹 대표를 초청해 사회책임 투자원칙의 제정을 강조한 이후, 4차례의 대규모 미팅을 통해서 사회책임투자원칙의 골격이 만들어진 상태다. 여기엔 UN과 각 금융기관, 그리고 전문가그룹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UN이 중심이 되어 사회책임투자원칙을 전 세계에 촉구할 계획이다.(송인경:2005)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책임 투자는 시작단계로 2001년 2천억 원 규모의 에코펀드(삼성증권)가 처음으로 출시되었다. 이후 2003년 국내 최초의 'SRI-MMF(사회책임투자-머니마켓펀드)'를 발매하여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으며 CJ투자증권이 SR1호를 운용한바 있다.

정부는 사회책임투자가 기업에 대한 규제수단이 아닌 사회책임 이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성이 있는 4대연금 등의 사회책임 투자법 제정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할 수 있다.

또한 환경금융상품 촉진을 위한 정책과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개발은 기업의 사회책임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

7. 맺음말

지구온난화의 피해는 더욱 치명적이 될 것이며 환경오염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의 해수면 은 2090년까지 33.9-40.7cm 상승할 전망(KEI)이며 매년 열대우림생물의 0.5%가 멸종되고 2100년에는 전체생물의 33%가 멸종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 공평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략은 위기의 지구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본문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권리가 환경과 사회적 가치보다 더욱 보호되고 있는 전 세계 단일시장 경제체제하에서 다국적 기업의 오염물 및 오염산업의 이전의 문제와 자유무역경제체제하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환경적 문제들을 짚어 보았다.

그리고 환경운동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하에서 (다국적) 기업 또한 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이행하는 한 주체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제환경규약에 있어 국제기구, 환경협약, 세계적 지속가능평가지수, 글로벌 환경규제, 사회책임 투자 등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의 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과 현황을 파악하였다.

짐콜린즈는 성공하는 기업의 유전자 3대 원칙 중 '이윤추구를 넘어 사회발전 사명을 다하는 기업'을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하였으며 피터드러커는 '진실로 공익에 속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기업 그 자체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다. 공공과 사적 이익이 충돌될 때에는 언제나 공적이익을 우선시 하고, 공적이익을 추구하며 기업의 사적인 이익도 달성하도록 창조적 경영을 하는 것이 기업의 자세이다'(문국현:2006)라고 지적한바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은 기업의 생존전략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의 과제이다. 기업은 사회공헌과 함께 기업사회 책임 이행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 노력들이 더욱 필요하다.

기업에 대한 다양한 국제적 환경규약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바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8년 3월에 제정될 ISO 사회적 책임 표준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 주체 범위를 기업뿐만이 아닌 정부, 지자체, 노조,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기업을 포함한 사회 각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노력들이 더욱 필요하다.

정부는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사회책임 정책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지도를 확대하고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기업사회책임 이행과 평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후 중소규모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이행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정책개발들이 필요하다.

기업과 시민단체는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이행하는 당사자이며 서로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 주는 협력자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과 시민단체의 상호협력이 더욱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my Domini, 2001,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 Making a Difference and Making Money*, (구홍표·이주명 역, 2004, 『사회책임투자』, 필맥)
- 녹색전망, 최병두 외 지음, 도요새, 2002년
- 레스터브라운, 2001, 『바이탈사인』, 도요새
- 문국현, 2006, 다보스포럼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블라드미르 앙드레프(Wladimir Andreff)지음, 우석훈 옮김, 세계화시대의 다국적 기업, 문원출판, 1999년
- 송인경, 2005, 금융시장에 부는 새바람, UN이 앞장서 이끈다
- 시민의 신문, 2005, 영국사례를 통해서 본 한국의 CSR 기획기사 1~5
- 안완식, '생물다양성 협약과 자생종의 중요성', 농업과학기술원 생물자원부, 2005년
- 월드워치연구소, 지구환경보고서2004, 도요새
- 임지애, 2005, 『한국기업의 중국직접투자 중 오염산업 이전 연구』, 북경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 농어촌사회연구소,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농민과 사회 2006년 봄호
- 한국과학기술원 사회적책임경영 연구센터·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2006,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현황 및 전망에 관한 보고서』
- 헤럴드경제, 2006년 11월7일
-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위원회, 2005.5, '지속가능 경영과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SMILE-1'
- 황상규, 2005, 『지속가능한 경영과 투자』, 한솜미디어
- 희망포럼, 2005, 『CSR국제표준화 동향과 한국사회의 대응』, 심포지움 자료집
- 힐러리 프렌치, *Vanishing Brdrs Protecting the Planet in the Age of Globalization*, World Watch, 2001년

[부록]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해외한국기업의 현지(피고용)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내법원에서의 민형사상 소송 가능성을 중심으로 -

황필규(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I. 상황의 설정

한국사기업 A가 한국공기업 A'등과 함께 공동으로 B국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려고 있다. B국에서의 다른 외국기업의 선례에 비추어 환경파괴와 B국의 공권력에 의한 B국 국민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충분히 예상된다. ① 한국기업이 ② 외국에서 ③ 외국인의 ④ 인권을 침해한 경우, 특히 강제노동 등이 이루어짐을 알면서 이에 의한 이익을 향유한 경우를 상정하여,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가능성, 특히 한국의 국내법원에서 이에 대한 소송 진행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II. 형사소송의 가능성

1.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 제2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한다”고 규정하여 속지주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죄를 범한”이라 함은 범죄의 행위나 결과 중 그 어느 것이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 한다”고 규정하여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범죄행위 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에서의 한국 국민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원은 형법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형법 3조에 의하면 우리나라 형사재판권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미침을 알 수 있으므로 내국인인 피고인이 이 건 범죄를 제3국인 태국과 일본에서 범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우리나라에 있다.(대구고등법원 1971.4.15. 71노176, 마약범위반피고사건)

이러한 국내법원에 의한 재판 가능성은 외국이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외국법에 의하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제되지 않는다.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 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6.6.24. 86도40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대법원 2001.9.25. 99도3337, 외국환관리법위반·상습도박)

속인주의에 의해 내국인의 국외범이 처벌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형

사재판권을 행사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형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과 범죄인인도협약(호주, 캐나다, 스페인, 필리핀, 파라과이, 칠레, 멕시코, 미국, 몽골, 아르헨티나, 태국, 중국, 뉴질랜드, 브라질, 일본,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과 국제형사사법공조협약(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등)이 체결되고 있고 국내법으로는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존재한다.

2. 형사특별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하여 형법 외에 형사특별법과 관련하여서도 내국인의 국외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형사특별법은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해외한국기업의 현지에서의 인권침해나 환경파괴와 관련이 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도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이나 환경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이 외국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환경 역시 국내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함이 전제되어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형법 제8조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형법의 적용이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를 불문하고 모두 가능하고, 외국법에 의하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법상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면 내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다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3. 소결

해외한국기업 또는 그 소속 한국직원의 외국에서의 행위가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속인주의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

III. 민사소송의 가능성

1. 국제적 재판관할권

1) 국제적 재판관할권의 의의

논의의 대상은 국제법상의 확립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국제법상의 재판권의 존부의 문제가 아닌 국내법인 국제민사소송법(“섭외적, 국제적 사안”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민사소송법적 규범)상의 관할권의 존부의 문제이다. 또한 국내민사소송법이 다루어야 할 과제로서 특별관할권의 문제, 즉 일국 내에 있어서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민사소송법의 대상으로서 일반관할권의 문제, 즉 어느 나라의 법원이 전체로서 관할권을 갖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일반관할권 중에도 외국판결의 승인의 요건에 관한 문제인 간접적 일반관할권이 아닌 자국이 관할권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인 직접적 일반관할권의 문제이다.

2) 일반관할권의 결정기준

학설은 ①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의 규칙은 특별관할권과 동시에 일반관할권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판적이 어느 곳인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 관할권이 있다는 토지관할유추적용설 ② 민사소송법의 규칙을 참고로 한다할지라도 국제민사소송법의 독자적 입장으로부터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관할배분이라는 보편주의의 관점을 가하여 수정된 규칙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관할배분설, ③ 원칙적으로 토지관할의 규정을 유추적하여 국제관할을 정하되 다만 이 기준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재판함이 부당한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배분설에 의하자는 특단의 사정설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국제사법상의 관할권 규정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의미를 가질 뿐이다.

한편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

은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의 한국기업과 외국인간의 법률관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규정을 기준으로하게 된다.

3) 한국기업의 외국에서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국제적 재판관할권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은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다른 외국기업 등과 공동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여기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에 대하여 한국의 국내법원은 원칙적으로 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우리 민사소송법 제4조는 제1항에서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외국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적용됨을 정하고 있는바,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등에 보통재판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수집의 용이성이나 소송수행의 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용소를 강제하는 것이 앞서 본 민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분쟁이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지점의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 맞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6.9. 98다35037, 신용장금액지급청구)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사법이 특별규정을 두고있다. 즉, 국제사법 제28조 제3항은 "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근로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나 "근로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가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3항은 "국가에서만"이라고 규정한 제4항과 달리 "국가에서도"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추가적인 관할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제4항은 사용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본 논의와는 관련이 없으며, 제5항의 관할 합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미 인정되는 관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과 관련한 관할조항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들이며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나 불법행위에서 인정되는 관할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준거법

1) 준거법의 의의

한국의 국내법원에 국제적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 재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이 무엇이어서 하는 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준거법이 문제, 즉 국제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국제사법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이다.

2) 한국기업의 외국에서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준거법

(1) 일반계약과 준거법

일반채권계약과 관련하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은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 선택이 가능하고 준거법의 변경이 가능함을 규정하여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외국인과 채권적 법률관계를 맺을 때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그 계약의 유형, 성질, 내용, 당사자의 국적, 주소, 목적물의 소재지 기타 여러 가지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탐구하여 당사자가 한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자 하였음이 인정될 때에는 한국법이 적용되게 되지만, 이러한 관계가 설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외국에서의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취업 중 재해를 당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소득세도 소득법에 의하여 부담하며, 우리나라 법에 따른 저축도 하기로 한 외에 근로계약서도 순국한문으로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근로계약으로 인한 민사 분쟁은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73.6.29. 71나2458 임금청구)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하여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2항과 제3항은 “가장 밀접한 관련”의 추정규정으로서 “양도계약, 이용계약 또는 위임, 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이행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 그의 이행당사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밀접한 관련”이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계약과” 관련이 문제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법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 국제사법 제26조에 의하여 한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역시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2) 근로계약과 준거법

근로계약도 채권계약이므로 당사자는 국제사법 제25조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제28조 제1항은 당사자에 의한 법의 선택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객관적 준거법인 근로자의 상거소지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소재지법의 강행규정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일반원칙인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외국인과 맺은 근로계약의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게 된다. 그러나 그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외국에서의 노동제공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국제법의 원리인 속지주의에 따라 노동자인 외국 법만이 적용되고 또 근로기준법의 법적 성질은 사법적 성질과 공법적 성질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데 사법적 성질의 규정은 섭외사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에 관한 지정이 있어야 하고 공법적 성질의 규정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만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과의 사이에 속지주의의 적용을 인정하는 조약이나 협정 없이는 외국에서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근로당사자 사이에 준거법에 관한 지정이 없었고 또한 우리나라와 월남공화국 사이에 속지주의의 적용을 인정하는 조약이나 협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 간에서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 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고 이 사건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실이 명백하니 비록 그 취업 장소가 월남공화국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적용근거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72.11.15. 71나 2207 임금등청구)

(3) 불법행위와 준거법

불법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이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및 외국법의 적용 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이나 범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의 준거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3조에서는 한국법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준거법 선택을 규정한 다른 조항들과는 차이가 있지만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을 사후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행한 외국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그 준거법이 한국법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하겠다. 다만 판례는 양 당사자가 모두 내국인 혹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섭외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히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비록 교통사고의 장소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국내 법인이고, 위 법인에 의하여 고용된 사고차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우리나라 국민이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바가 못 되는 경우에는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섭외적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 건은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라 할 것이고, 또 국내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는 도로운송차량법의 그것과는 달리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보다 신속 정확한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임에 비추어 볼 때 소론과 같이 본 건 사고 장소가 외국의 도로상이고 또 사고차가 외국의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라는 사유만으로 본 건 사고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범주에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1.2.10. 80다2236)

(4)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된 경우 이에 대한 제한 혹은 배제 가능성

① 외국법의 적용

국제사법 제5조는 “법원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준거법인 외국법에 대한 조사는 직권조사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적용 및 조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외국법은 법률이어서 법원이 권한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감정인의 감정이나 전문가의 증언 또는 국내의 공무소, 학교 등에 감정을 촉탁하거나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방법만에 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0.4.10. 89다카20252 집행판결)

대법원은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된 경우 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흠결 또는 그 존재에 관한 자료의 미제출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에 대하여, 그리고 섭외사건에서 외국법규에 대한 해당 국가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외국법규의 내용 및 의미의 확정방법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 적용되고 있는 의미, 내용대로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 법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는바, 그러한 조리의 내용은 가능하면 원래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에 의한 해결과 가장 가까운 해결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그 외국법의 전체적인 질서에 의해 보충, 유추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 외국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법이 조리의 내용으로 유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0.6.9. 98다35037 신용장금액지급청구)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 법원으로서 일반적인 법해석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2.9. 94다30041 신용장대금, 구제조치해제)

이 법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국제사법 제6조)

② 외국법 적용의 제한 혹은 배제 가능성

우선 특별규정으로 제32조 제4항은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법에서 보장되는 손해배상의 성질이나 범위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일반규정으로는 국제사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들 수 있다. 제7조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더라도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강행법규, 예를 들면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은 여전히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위 대한민국의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른바 단순한 강행법규가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를 말한다. (법무부, [국제사법해설](2001), 38-39면)

여기서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강제노동금지의 경우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노역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제8조 제3항에서 강제노동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국제사법 제8조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준거법 지정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9조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하여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의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준거법인 외국법의 국제사법 혹은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우리나라 국적의 처가 미합중국 펜실베이니아주 시민인 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은,涉外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미합중국법이라 할 것인데, 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涉外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 속하는 지방인 펜실베이니아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미합중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된 이혼에 관한涉外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부일방의 주소지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그 법정지법이 준거법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처가 우리나라에 미합중국법상의 주소지를 가지고 있다면涉外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서울가정법원 1991.5.9. 90드75828 이혼청구)

마지막으로 국제사법 제10조는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한국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법의 배척은 내국의 공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배척의 결과 생긴 공백은 내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어떤 외국법의 적용을 공서를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곧 그 배척된 범위 내에서 내국의 공서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강행규정과 공서법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나 강행규정과 관련하여 언급된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내용은 공서법에서도 동일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의 해석기준과 관련하여 제7조 신설 이전의 판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시하고 있다. 제7조 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이 규정된 이상 판례의 태도도 어느 정도 수정이 예상된다.

涉外법률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정한 외국법의 규정이나 그 적

용의 결과가 우리 법의 강행규정들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涉外법 제5조가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곧바로 당사자 사이의涉外법률관계에 그 외국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2.10. 98다9038 손해배상(기))

涉外법 제5조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의 규정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지 여부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적용된 결과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위 규정의 적용을 배척하는 것이 국제사법질서를 현저히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민사지법 1999.7.20. 98가합48946 대여금반환)

한편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 해당여부와 관련된 판결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일정한 도박채무의 유효성과 법적 절차에 의한 도박채무의 강제회수를 보장하고 있는 미합중국 네바다주법의 규정은 도박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에 명백히 위배되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 도박채무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법적 절차에 의한 도박채무의 강제회수에 조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사법질서를 현저하게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涉外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카지노 도박장에서 사용되는 칩을 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신용대부약정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涉外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인 위 네바다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서울민사지법 1999.7.20. 98가합48946 대여금반환)

대한민국 국민인 양자가 미합중국 국민인 양친을 만난 일조차 없고 양친 역시 양자를 전혀 돌보지 아니하는 등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양친자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자가 그 관계의 청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